

시 보



정 읍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30호 2026년 9월 11일(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정읍시 훈령 제517호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정읍시 훈령 제518호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 6

공 고

- 정읍시 공고 제1659호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정읍시 공고 제1666호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1
- 정읍시 공고 제1678호 【정읍시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6
- 정읍시 공고 제1700호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1
- 정읍시 공고 제1701호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9
- 정읍시 공고 제1702호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8
- 정읍시 공고 제1707호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5
- 정읍시 공고 제1709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1
- 정읍시 공고 제1710호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
- 정읍시 공고 제1711호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일부개정조례안】 - 82
- 정읍시 공고 제1712호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2
- 정읍시 공고 제1713호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3
- 정읍시 공고 제1715호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8
- 정읍시 공고 제1717호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31

발 행 : 정 읍 시

편 집 : 시민소통실

회
람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읍 시 장

2026년 9월 11일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공고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_____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 2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합격취소 등)

-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u>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u> <u>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시험방식은 업무 특성에 맞게 선택</u> <u>적으로 실시하되 제1호와 제5호</u> <u>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u> <u><단서 신설></u>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채용절차 등) ① ----- ----- <u>다음</u> ----- ----- ----- ----- ----- ----. <u>다만,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u> <u>에 따른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u> <u>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서류전형) ①·② (생략)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 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 관 홈페이지에 <u>공고한다.</u> <u><단서</u> <u>신설></u>	제12조(서류전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공고하여야 한다. <u>다만, 제8조제</u> <u>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u> <u>있다.</u>
제20조(합격 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 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 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	제20조(합격 취소 등) ① ----- ----- ----- -----

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u>제2조제10호</u>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생략) 제21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 9.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제2조제9호</u>-----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채용 구비서류) ----- ----- -----. ----- ----- ----- <u>수 있으며,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u> 1. ~ 9. (현행과 같음)
---	---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읍 시 장

2026년 9월 11일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을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승인내역을 예산부서에 통보” 를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근로자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근로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시점 외에 발생하는 채용사유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통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주간”을 “1주 간”으로,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할 때 정하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를 “정하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지급일”을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의 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____일부터 ____일까지로 한다. (주휴일 매주 ____일)

※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 1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 및 유급휴일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매년 정읍시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거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단가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지급한다.
- 보수는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월____일에 지급한다 (보수의 산정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_____).

7. 기 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동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전화 : _____)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u> 제4조(근로자 등의 인원 · 예산관리) ① 사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다음연도 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계획을 관리부서에 <u>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승인내역을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해당 업무의 중지 · 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정읍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u> 제4조(근로자 등의 인원 · 예산관리) ① ----- ----- ----- ----- <u>제출</u>----- ----- -----. ② 관리부서장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근로자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근로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시점 외에 발생하는 채용사유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통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정읍시 소속

제19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u>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의 범위에서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할 때 정하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u> ② (생략) 제26조(임금) ① (생략) ② 임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정읍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u>지급일</u>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생략)	<u>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19조(근무시간) ① ----- 1주 간----- ----- ----- ----- 정하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임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첨과 같이 개정함)
---	---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4.(금) ~ 9. 24.(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및 정착화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대관, 프로그램, 신규시설 등 운영 체계에 맞는 이용료 규정 현행화
- 관내 연구개발특구 및 산업단지 내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 대관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 조례에 해석이 불분명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규정 (안 제7조)
- 사용료, 수강료 등 현행화 (안 별표 2)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4일까지 정읍시장(참조 : 미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 전화번호 : 063-539-5645
 - FAX : 063-539-6520, - E-mail : zinol116@korea.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미래산업과(☎063-539-5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을 “**정읍시 첨단산업의 진흥과 시민**”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민, 내국법인 및 비영리단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수강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료 등을**”을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등**”을 “**사용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비영리의**”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민**”을 “**정읍시의 첨단산업의 진흥과 주민**”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등**” 을 “**수강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나. 그 밖에 첨단산업의 진흥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산업단지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요금은 주변 시세와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정읍시 첨단과학로 201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	---------------------------------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사용료(대관) (단위: 원)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체육관	2시간	40,000	

대강당, 대회의실	2시간	30,000	▶ 단체(대관) 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대관 시간에만 사용 가능
다목적실, 중회의실	2시간	20,000	
동아리실, 기타	2시간	5,000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프로그램 및 교육 수강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과목당 수강기간)	수강료	비 고
체육단력실	1개월	10,000	
체육·문화·취미·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복합문화센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시민</u> 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시설, 다목적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1. ----- ----- <u>정읍시</u> <u>첨단산업의 진흥과 시민</u>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생략)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1.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u>
2. <u>정읍시민 및 관내 단체</u>	2. <u>국민, 내국법인 및 비영리단체</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는 별표 2의 사용료, <u>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u> 를 사용신청 할 때 징수할	제7조(사용료 등 및 감면) ① ----- ----- - <u>수강료</u> ----- -----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 전액 감면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
- 나.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 다. 그 밖에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면

- 가. ~ 마. (생략)

② (생략)

<신 설>

[별표 1]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

1. 사용료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 및 -----
- 다. ----- 정읍시의 첨단산업의 진흥과 주민 -----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 나. 그 밖에 첨단산업의 진흥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강료 -----

-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단지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의 이용요금은 주변 시세와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표 1]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정읍시 금구길 8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정읍시 첨단과학로 201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정읍시 복면 3산단4길 67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

1. 시설 전용 사용료(대관)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체육관	2시간	40,000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당초 금액에 50%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대강당	2시간	30,000	
생활문화센터	2시간	20,000	
다목적실	2시간	20,000	▶ 단체(대관) 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대관 시간에만 사용 가능
운동시설	2시간	10,000	
기타	2시간	5,000	

2. 시설 사용료(개인)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고
운동시설	2시간	2,000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당초 금액에 50%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학생(고등학생 이하)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음

3. 교육 수강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강료	비 고
체육문화취미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시간 이하	10,000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초과	15,000	

명칭	위치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정읍시 첨단과학로 201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정읍시 복면 3산단4길 67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대관)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체육관	2시간	40,000	▶ 단체(대관) 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대관 시간에만 사용 가능
대강당, 대회의실	2시간	30,000	
다목적실, 중회의실	2시간	20,000	
동아리실, 기타	2시간	5,000	

2. 프로그램 및 교육 수강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과목당 수강기간)	수강료	비 고
체육단력실	1개월	10,000	체육문화취미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체육문화취미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 중인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로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인력,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되며, 수소충전소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예고기간 : 2026. 9. 4. ~ 9. 28.(24일간)

3. 주요내용

- 【안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
- 【안 제2조, 제3조】 설치 등, 시설물
- 【안 제4조, 제5조】 운영, 충전 비용
- 【안 제6조, 제7조】 운영의 위탁, 위탁사무의 범위
- 【안 제8조】 준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전자우편(이메일) : hapoly3112@korea.kr

－ 주소 :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자원순환과

－ 팩스 : 063-539-6529(팩스 제출 시 팩스 수신 확인 요망)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정읍시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063-539-8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명칭은 정읍시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

③ 위치는 정읍시 농소동 45-15번지 일원(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내)에 둔다.

제3조(시설물) 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 저장소
3. 고압가스 충전설비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제4조(운영) ① 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충전 요금) 수소 충전 요금은 수소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사무의 범위) 위탁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충전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읍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공고 제2026-1678호

「정읍시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소비 촉진
- 정읍시 아동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
-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중심의 과일간식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가정 보육 중인 아동까지 지원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2조】 본 조례 목적, 정의
-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 【안 제5조 ~ 제7조】 지원신청, 지원제외 및 환수, 지도·감독

3. 의 견 제 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읍시장(참조 : 농수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정읍시 제2청사 농수산유통과
(전화 063-539-6162, FAX 063-539-6534)

다. 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농수산유통과(063-539-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정읍시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정읍시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과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나아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과일”이란 일반적으로 과수에서 생산되는 식용 가능한 열매와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등 통상 과일로 소비되는 작물을 포함한다.
3. “과일 꾸러미”란 정읍시에서 생산·가공된 과일 등 농산물로 정읍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과일 꾸러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취학 영유아로 한다.

② 정읍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영유아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꾸러미 지원에 필요한 지원 품목, 공급 횟수, 공급업체 등은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과일 꾸러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꾸러미에 상당하는

가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시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급업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공급되는 과일의 품질 및 위생 상태
2. 배송 및 보관의 적정성 여부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미취학 영유아 과일 꾸러미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군·경·소방 합동상황실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강화

4.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 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52
 - FAX : 063-539-6528, - E-mail : doee92@korea.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작전과장,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정작과장, 정읍경찰서 경비안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과장,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을 “정작과장, 335방첩부대 방첩대장”으로 한다.

5. 335 방첩부대 135방첩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방첩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경계태세 1급 발령 및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은 경계태세 1급 발령시부터 ‘통합방위병중사태’까지는 정읍경찰서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을중사태’선포부터 평상시 상태회복까지는 8098부대 3대대 책임 하 운영한다.

1. 상황실장 : 경계태세 1급부터 병중 선포 시 정읍경찰서 경비안보과 담당

자, 을종 선포 시 제8098부대 3대대 저격반장 및 지역대 정작과장, 3대대 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자

2. 구성원 : 軍과 警의 구성원은 1호와 동일하며, 정읍소방서는 대응예방과 부서원으로 편성한다.

3.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정읍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④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5. 335 방첩부대 135방첩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방첩관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⑤ 협회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 간사 : 제8098부대 3대대 <u>작전과장,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장</u>	3. ----- --- <u>정작과장, 정읍경찰서 경비안보과장</u>
4.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제 8098부대 3대대 <u>정보과장,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u>	4. ----- ----- ----- <u>정작과장, 335 방첩부대 방첩대장</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군·경·소방 합동상황

실의 설치 및 운영) ① 경계태
세 1급 발령 및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와 통합방위태세 확립
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지
원본부에 군·경·소방 합동상
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군·경·소방 합동상황실은
경계태세 1급 발령시부터 ‘통
합방위병종사태’까지는 정읍
경찰서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을중사태’ 선포부터 평상시
상태회복까지는 8098부대 3대
대 책임 하 운영한다.

1. 상황실장 : 경계태세 1급부터
병종 선포 시 정읍경찰서 경
비안보과 담당자, 을중 선포
시 제8098부대 3대대 저격반
장 및 지역대 정작과장, 3대대
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자

2. 구성원 : 군과警의 구성원은
1호와 동일하며, 정읍소방서
는 대응예방과 부서원으로 편
성한다.

3.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

	<u>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정읍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u>
--	--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 ~ 10. 1.(21일간)

3. 개정이유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1295(2026.7.14.)호에 따른 개정요청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4. 주요 내용

- 제3조 개정(“정읍시” → “거주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지자체”)

5. 의견제출

- 상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56180) 정읍시 충정로 234(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 2) 팩 스 : 063-539-6528
- 3) 이 메 일 : gustj5154@korea.kr

6. 기 타

- 이메일 및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539-5953)에게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539-5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읍시”를 “거주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u>정읍</u> <u>시</u>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 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u>거주</u> <u>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u> <u>지자체</u> ----- -----.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주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홍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정읍시립미술관
2.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3.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4.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5.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6. 정읍시 주차장
7. 정읍시 체육시설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②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③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까지”를 “제5호 및 제9호”로 한다.

9.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⑥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⑦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정 읍 시 장

1. 개정이유

-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시설물 사용료 및 서비스 이용료의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명칭 및 위치 신설 (제2조)
 -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조성하여 관리책임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관리·감독 중인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
- 시설물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기준 신설 (제11조)
 - 시설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료뿐만 아니라 시설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물의 유형 및 목적별 징수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9. 2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 출 처

- 주 소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정읍시청 제2청사 지역활력과
- 전화번호 : 063-539-6842
- FAX : 063-539-6544
- E-mail : hongza09@korea.kr

○ 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 의 : 정읍시청 지역활력과(☎ 063-539-6842)

- 붙임 1.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수탁자**”를 “**시장 또는 수탁자**”로, “**이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운영 여건 등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면장 및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물 명	위	치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정읍시	충정로 25
대흥무지개센터	정읍시	입암면 접지중앙길 15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정읍시	소성면 입고로 524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정읍시	덕천면 태고로 577
태산선비문화관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
영원활력센터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54
말목장터 어울림센터	정읍시	이평면 황토현로 290
감곡 디딤돌문화센터	정읍시	감곡면 원삼1길 22
감곡 공유부엌	정읍시	감곡면 원삼1길 56
칠보 행복이음센터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50-13
칠보 행복공작소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50-13
칠보 휴게쉼터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50-13
북면 행복마루관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31-7
북면 행복쉼터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03
입암 입춘대길복지관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473
고부 동학울림센터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30
태인면 피향정문화센터	정읍시	태인면 수학정석길 11
백연권역 필연야구장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감산로 107
옹동면 참살이광장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1900번지

[별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용료 및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1조 관련)

1. 회의실 등 사용료 징수기준

시 설	사용목적	이용기준	면적	금액(원)	비고
회의실 등	회의, 교육, 조리실 등	1시간	50㎡ 이하	10,000	부대시설 포함
			50㎡-100㎡ 이하	15,000	
			100㎡-150㎡ 이하	20,000	
			150㎡-200㎡ 이하	25,000	
			200㎡ 초과	30,000	

※ 이용료는 최초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마다 50%를 가산한다.

2. 운동시설 등 이용료 징수기준

시 설	사용목적	이용기준	세부 구분	금액(원)	비고
운동시설	야구장	2시간	야외 야구장	60,000	주간
			실내 연습장	70,000	주/야간
	체력단련실	1개월		20,000	

3. 목욕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시 설	이용기준	구 분		금액(원)	비고
목욕탕	1인 / 1회	지역 주민	65세 미만	5,000	
			65세 이상	3,000	
			미취학아동	3,000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지역주민 외		한국목욕업중앙회 정읍시지부 성인 표준요금과 동일 금액	

※ 체력단련실과 목욕탕을 함께 이용하는 자는 월 이용권(40,000원) 사용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말하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u>이용료</u>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u>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이용료</u> 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 -- <u>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u> ----- <u>사용료 및 이용료</u> ----- ---. ② <u>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운영 여건 등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면장 및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③ ----- ----- ----- <u>사용료 및 이용료</u>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정 읍 시 장

1. 자치법규명 :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9월 30일(21일간)
3. 일부개정 이유
 -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축하 물품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기준 명시
4. 주요내용
 - 안 제2조 : 정의
 - 안 제5조 ~ 제8조 :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및 방법 지원 제외 대상
 - 안 제8조 : 지원 제외 대상
 - 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자 확인 사항 명시 등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팩스·인터넷 제출 시 행정전화로 수신 확인 요망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팩스 063-539-6527, 전자우편 : godboy200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063-539-5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수어르신**”을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1명당**”으로,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등을 위한 물품으로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생애 한 차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장수 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연락처	주 소
	※거주 시작일 년 월 일	※1년이상 거주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 후 작성
신청 내용	장수축하물품 (100만원 이내 / 희망 물품명 우선순위 작성) ① , ② , ③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정읍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신분증 제시, 위임장(대리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 유의사항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수축하물품”이란 <u>장수어르신</u> 에게 장수 축하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2. ----- <u>장수 어르신</u> ----- ----- -----.
제5조(지원 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상당의 축하 및 건강유지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 --- <u>범위에서 1명당</u> ----- ----- <u>등을 위한 물</u> <u>품으로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지</u> <u>원은 생애 한 차례로 한정한다.</u>
제6조(지원 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 -- <u>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 ② (생 략)	제7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장수축하물품은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u>	<삭 제>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장수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 제외)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u>이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u>

정읍시 공고 제2026-1709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내에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요청 및 지원(안 제6조의2제2항·제6항)
- 시·군·구지원센터의 장, 임무 및 표준편제(안 제6조의2제3항·제4항, 별표 1의2)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지원센터의 통합 편성·운영(안 제6조의2제5항)
- 상황판단회의 심의 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제1호)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안 제11조)
- 조문 체계 및 장 구성 정비(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85
- FAX : 063-539-6528, - E-mail : medalion@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군·구대책본부에 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군·구지원센터의 장은 시·군·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시·군·구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군·구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지원센터를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제15조 앞의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앞의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 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군·구대책본부에 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군·구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생략)	<u>시·군·구대책본부의 차장이</u> <u>겸직하며, 시·군·구지원센터</u> <u>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④ 시·군·구지원센터의 임무</u> <u>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u> <u>같다.</u> <u>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u> <u>·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u> <u>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u> <u>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u> <u>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u> <u>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u> <u>·구지원센터를 「시·군·구</u> <u>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u> <u>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7호</u> <u>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u> <u>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u> <u>영할 수 있다.</u> <u>⑥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제</u> <u>2항에 따라 시·도재난피해자</u> <u>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u> <u>우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u> <u>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u> <u>을 지원해야 한다.</u>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2. ~ 5. (생략)

③ (생략)

<신 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제11조 ~ 제14조 (생략)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신 설>

제15조 ~ 제19조 (생략)

② _____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정읍시 공고 제2026-1710호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초기의 「피해자·가족 지원 및 소통 가이드」를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할 때 통합지원본부 실무팀과 지원센터를 통

합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소통 기능 신설(안 제7조제3항제7호)
-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반영(안 제7조제4항)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실무팀의 통합 편성·운영(안 제7조제7항)
- 통합지원본부 편제 및 임무 현행화(안 별표 1, 별표 2)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85

- FAX : 063-539-6528, - E-mail : medalion@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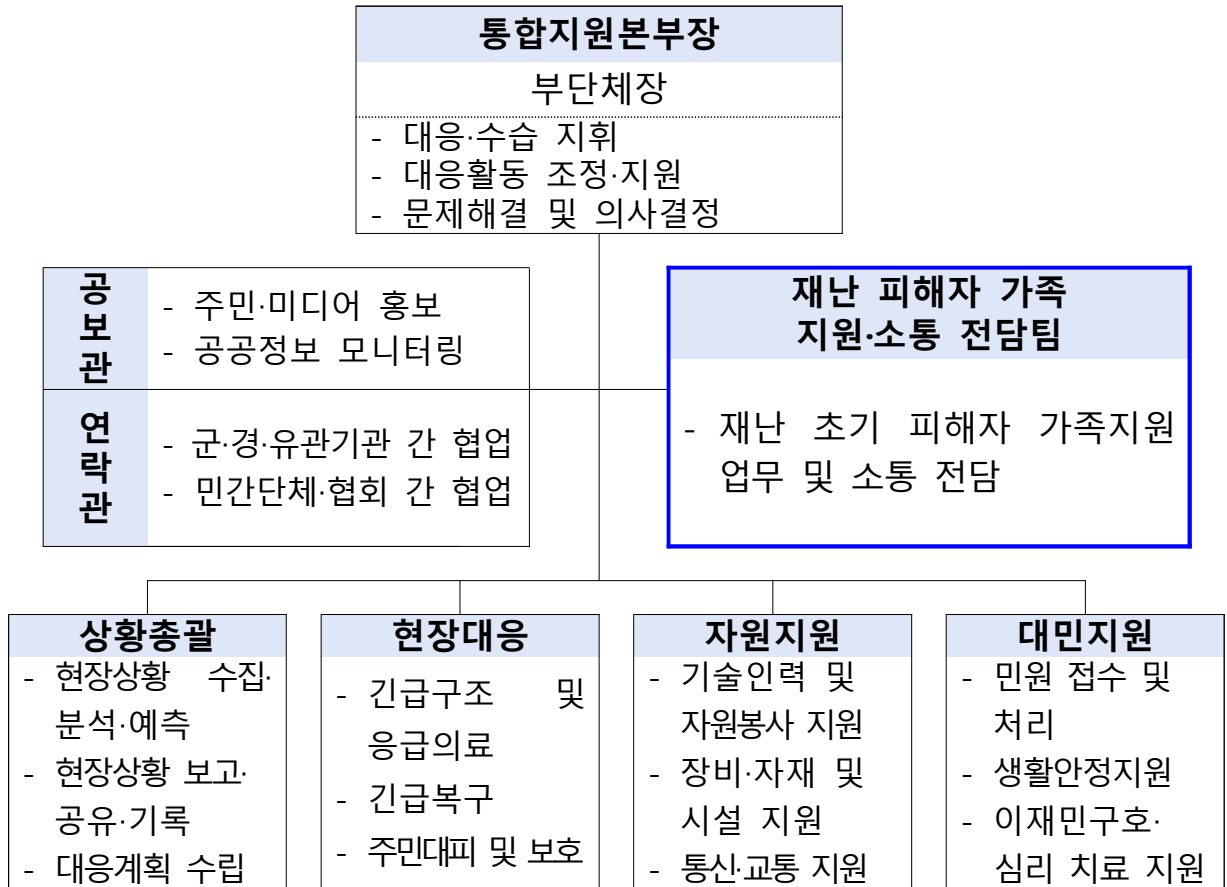
⑦ 통합지원본부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실무팀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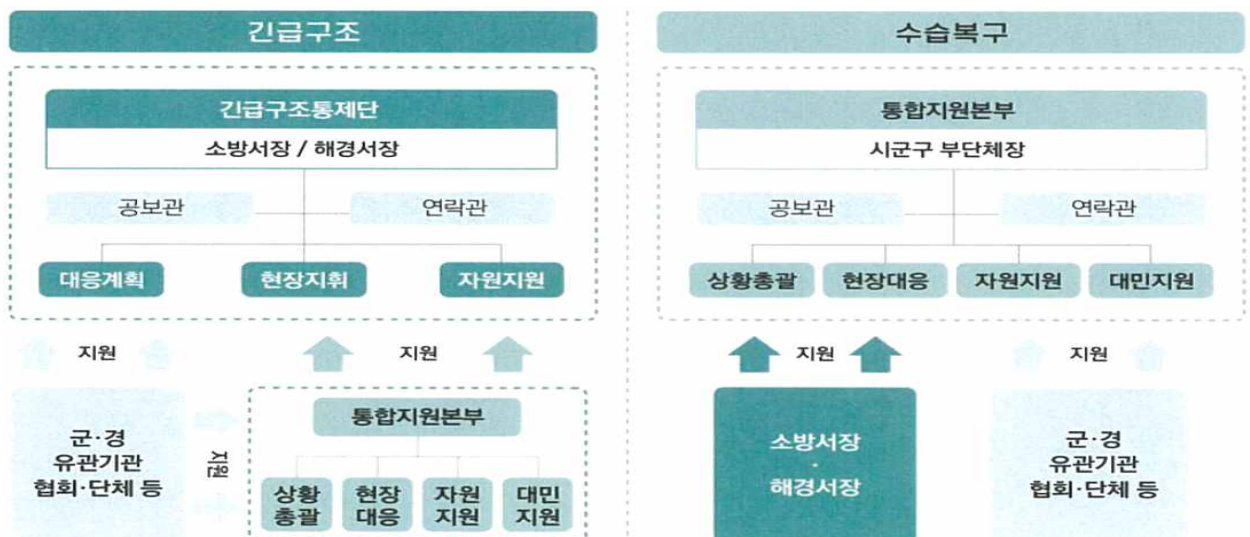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 ① (생략)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② (생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③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u>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u>공보관</u>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 ----- ----- ----- <u>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단팀</u> , 공보관-----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u>통합지원본부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u>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실무팀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정읍시 공고 제2026-1711호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사실을 공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피해사실확인 신청 및 확인·발급 절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관리
- 관련 서식 신설(피해사실확인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85
 - FAX : 063-539-6528, - E-mail : medalion@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인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인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읍시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읍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 공공임대주택정보, 건축물대장, 시설업종별 허가·등록증명서 등)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초본 / 2. 입금계좌정보 / 3. 공공임대주택정보 / 4. 건축물대장(또는 토지 및 임야대장) / 5. 시설업종별 허가 및 등록증명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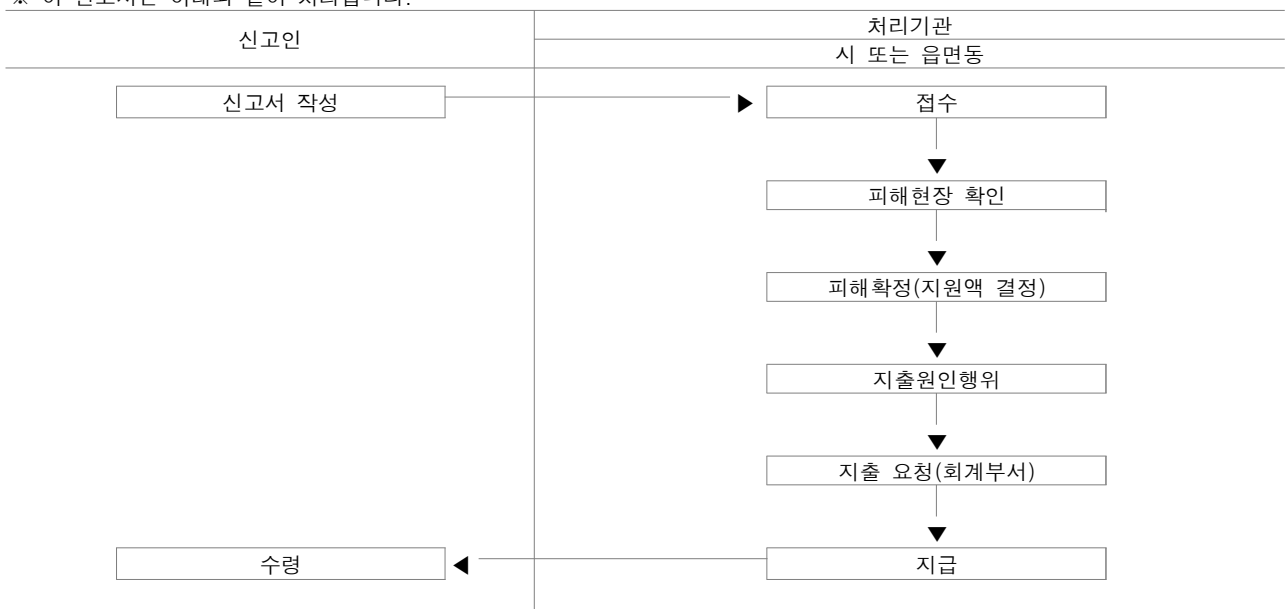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인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 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내 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도			
제출처			

「00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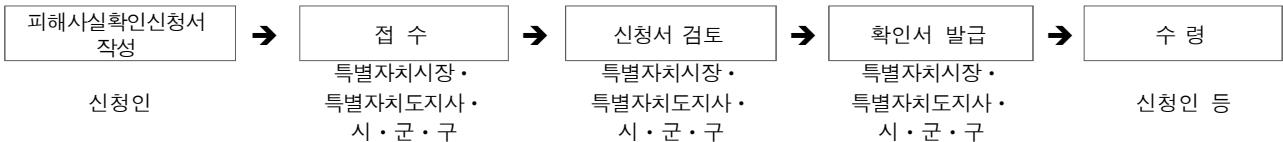
정 읍 시 장

직인

유의사항

-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 서 같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〇〇군 → 〇〇-0000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용도	제출처
	성명	주소	생년 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u>
<u>제9조 ~ 제14조</u> (생략)	<u>제10조 ~ 제15조</u>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정읍시 공고 제2026-1712호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주택화재로 주거 기능을 상실한 시민이 신속히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주택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건축물대장이 없는 노후·농촌 주거 등 공부상 등재가 미비하더라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지원 대상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과세대장, 주거사실 확인 및 담당 공무원 현지확인 등 입증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의 단독주택 인정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호 단서)
-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배제
- 지방세 과세대장, 주민등록 관계서류, 이장·통장 주거사실확인, 담당 공무원 현지확인을 통한 실제 주거 사용 인정
- 지원 대상 주택 범위의 합리적 정비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85
- FAX : 063-539-6528, - E-mail : medalion@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 과세대장, 이장·통장의 주거사실확인, 주민등록 관계서류, 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령”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피해내역	주 소 세부 주소까지 작성		
	소 유 자	소유자와의 관계	
	피해면적 전체면적 m ² 중 m ² 소실	소실정도 전소/반소/부분소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기준)	
	피해원인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환수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2. 위임장 1부. (대리인 신청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신청인이 가족인 경우 또는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인이 법정상속인인 경우 (피해주민사망시) 2. 건축물대장현황, 세금납부현황 정보 3.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 (완전 후 30일 이내)	→	접 수 (관할 읍·면·동)	→	현장조사 (관할 읍·면·동) (3일 이내)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재난안전과) (7일 이내)
---------------------------------	---	-------------------	---	-------------------------------	---	-----------------------------------

피해복구 이행주체 확인서

화재 발생일			
피해주택 주소			
성명(임대인, 소유자)		연락처	
성명(임차인, 실거주자)		연락처	

본인(임대인, 소유자)은 위 피해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택
피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복구의 실제 이행주체를 확인합니다.

☐ 피해복구 이행주체

☐ 임대인(소유자) ☐ 임차인(실거주자) ☐ 기타(_____)

※ 위 확인 내용은 향후 피해복구 관련 지원 및 행정처리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안내드리며,
임대인(소유자)와 임차인(실거주자) 쌍방이 함께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소유자)

(서명)

임차인(실거주자)

(서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화재 피해”란 정읍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 ----- ----- ----- --. <u>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 과세대장 또는 이장·통장의 주거사실확인, 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생략)	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법령</u> 을 위반하여 설	5. ----- <u>건축법</u> -----

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 ①·② (생략) ③ 주택화재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실거주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피해지원금의 2분의1을 지급한다. <후단 신설>	----- 제5조(지원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이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에 따른다.</u>
--	---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6-147호(2026.5.18.)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

4.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화재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설

5.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목)까지 정읍시장(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73
- FAX : 063-539-6528
- E-mail : mjk0119@korea.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정읍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 공고 제2026-1715호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080 전화 관련 규정이 운영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금 중복 지급 금지, 여비 지급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자율방재단 활동의 실제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확인서 서식을 강화하여 활동 관리 및 수당·실비 지급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080 전화 관련 규정 삭제
- 보험 중복 지급 금지조항 삭제
-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여비 규정 정비
- 자율방재단 활동내용확인서 서식 강화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63-539-5967
 - FAX : 063-539-6528, - E-mail : jyw4667@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단장이”를 “읍면동 방재단 대표 중에 단장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 2-1호, 제 2-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으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위들에게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9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정읍시지역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읍면동-001

성 명	(남,여)	생년 월일		혈 액 형	
주 소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이통장 겸직		
			타재난단체 겸직		
희 망 활동내용	(상황총괄반, 현장예찰반, 응급복구반, 장비지원반, 재난구호반, 홍보반, 기타 등 중 선택)				
[특이사항]					

상기 본인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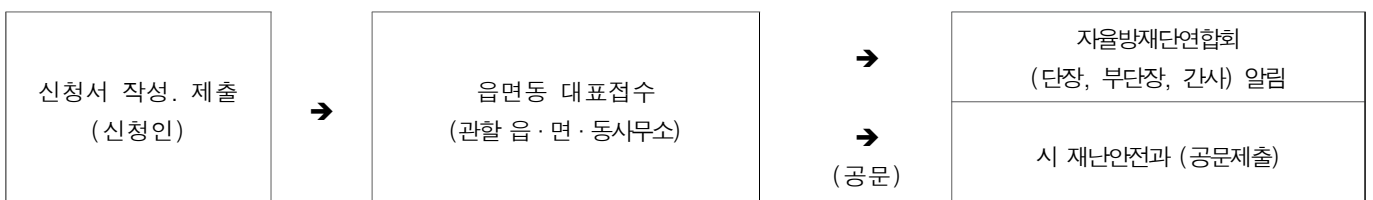
년 월 일

가 입 회 망 자

(인)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처 리 절 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방재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시 보유, 탈퇴시 즉시 파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개인정보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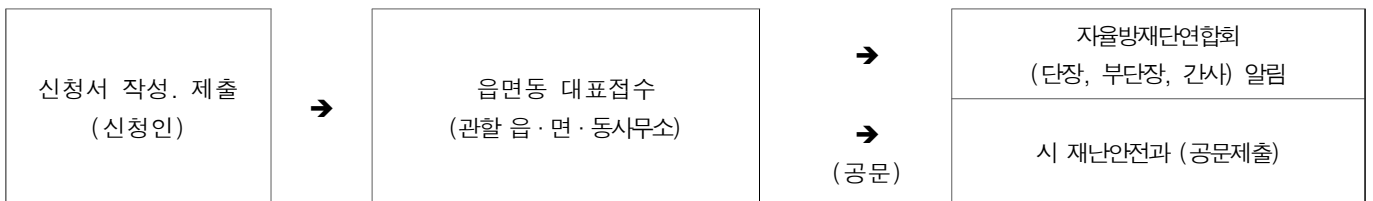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구성반
1							상황총괄반
2							현장에찰반
3							응급복구반
4							장비지원반
⋮							재난구호반
							홍보반
							기타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방재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시 보유, 탈퇴시 즉시 파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개인정보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정읍시장 귀하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 년 월 일 : 부터 ~ 년 월 일 : 까지 (분)	
	장 소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 자율방재단 대표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읍.면.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성명	(인)

본인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읍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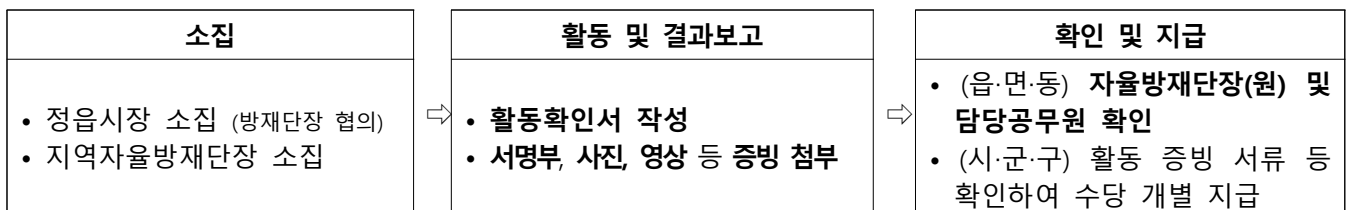
※ 확인자는 읍면동 자율방재단 대표 및 읍면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등

☐ **활동확인 증빙자료**

(활동사진 대지)	(활동사진 대지)
(장소/시간/임무)	(장소/시간/임무)
(활동사진 대지)	(활동사진 대지)
(장소/시간/임무)	(장소/시간/임무)

□ **참석자 서명부 (읍면동)**

연번	성 명	서명부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 및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 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연중 활동계획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출 입 증

사진
3×4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cm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 사용할 수 없음

2007.

정 읍 시 장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자치단체 직인 사용

7.7cm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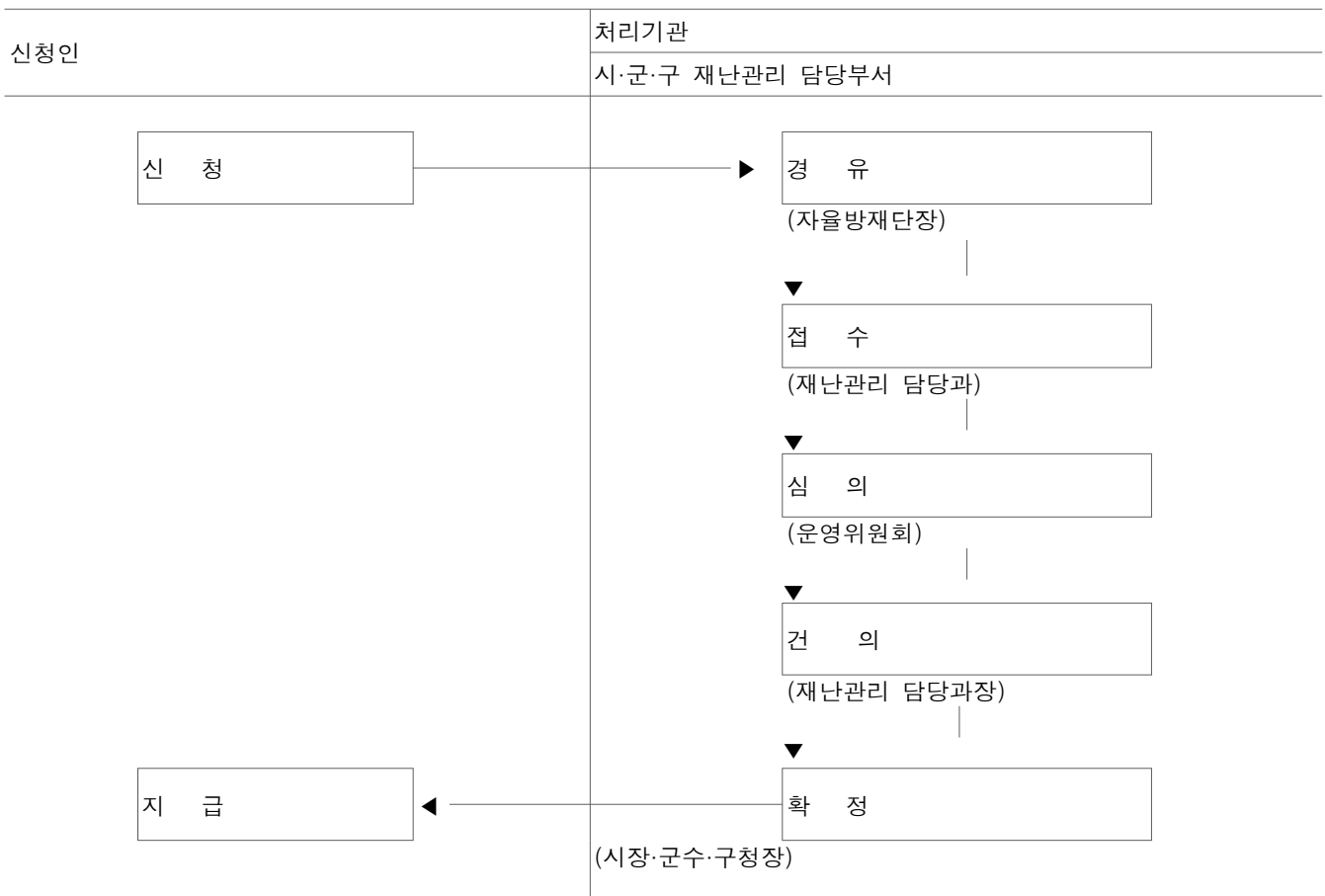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읍면동 대표 동의서

정읍시 의 지역자율방재단대표(임기 . . ~ . .)를
선출함에 있어 결과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추천동의 서명

읍면동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비고

※ 읍면동 방재단원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자 과반수 이상 서명 필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조직) ①·② (생략)	제4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단장.간사는 <u>단장이</u> 지명한다. .	③ ----- 읍면동 방재단 대표 중에 <u>단장이</u> ---. <후단 삭제>
④ 단원은 개인 및 단체가 있으며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 2-1호, 제 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별지 제2호서식”-----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방재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u>사람</u> 으로 한다.	⑧ ----- ----- ----- 사람 으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⑧ (생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u>다만,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u> 3. ~ 7. (생략) ⑩ (생략) ⑪ <u>제9항제1호에 따른 필수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따른다.</u>	⑥ · ⑦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⑧ ----- ----- -----. 1. (현행과 같음) 2. ----- ----- --. <단서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⑨ (현행 제10항과 같음) <삭제>
--	---

정읍시 공고 제2026 - 1717호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일부개정에 따라,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6년 9월 11일 ~ 9월 30일

3. 주요내용

【조례】

- 경로당 지원 항목에 ‘경로당 시설 양곡 및 부식비’ 추가
(안 제3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항목에 부식비 추가 (안 제2조제4항)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팩스 063-539-6527 E-mail : dmsdklee@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메일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539-5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경로당 시설 양곡 및 부식비**”를 추가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3조(경로당 지원)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	5. <u>경로당 시설 양곡 및 부식비</u>
6.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6. <u>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u>
7.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화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7. <u>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u>
8. 경로당 시설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비	8. <u>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화이나 운동기구 구입비</u>
9.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u>경로당 시설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비</u>
② (생략)	10. <u>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② (현행과 같음)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양곡비” 를 “양곡비, 부식비”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로당설치) ① ~ ③ (생 략)	제2조(경로당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 지원받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냉 · 난방비, 간식비, <u>양곡비</u> , 환경개선사업비 등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u>양곡비, 부식비</u>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정읍시장 귀하